

국내식품 중 농약[] 동물용 의약품[] 잔류허용기준 설정[] 변경[] 신청서 설정면제[]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 설정: 12개월 변경/설정면제: 7개월
신청인	업소명(상호)	대표자 성명	
	영업의 종류	영업허가(신고)번호	
	주소		
	전자우편 주소	전화번호 (팩스번호)	
기준 설정/변경/설정면 제 신청 화합물명			
기준 설정/변경/설정면 제 신청 식품명			
신청사유	※ 신청의 배경, 목적, 타당성, 파급효과 등을 간결하고 명확히 작성하십시오(필요 시 별지 사용).		

「식품위생법」 제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제1항, 제5조의3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국내식품에 대한 농약(동물용 의약품)의 잔류허용기준의 설정/변경/설정면제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식품의약품안전처장

귀하

첨부자료	1.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독성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각 2부 2.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식품 잔류에 관한 자료와 그 요약서 각 2부 3. 농약 또는 동물용 의약품의 표준품	수수료
		없음

처리 절차

